2025.1.15.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법인세 공제 감면 및 세정지원 제도

광주지방국세청
NTS Gwangju Regional Office

INDEX

01 중소기업과 세금

02 시설투자와 세금

03 고용증가와 세금

04 연구개발과 세금

05 구분경리 및 사후관리

06 유용한 세정지원 제도

1. 중소기업과 세금

광주지방국세청
NTS Gwangju Regional Office

(1) 중소기업에 한해 주어지는 조세 지원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세액의 50~100%)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5~30%, 최대 1억원 한도)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회보험료의 50~100%)
- **경력단절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해당인건비의 30%)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 (해당인건비의 30%)
- **상생결제 지급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급액의 1.15~0.5%, 10%한도)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임금감소액의 10% + 보전액의 15%)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경영성과급의 15%)

기타 조세지원

- **최저한세율 적용 우대** (중소기업* 7%, 일반기업 10~17%)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이후 2년간 9%

- **접대비 한도액 우대**
- **대손금 특례**
-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직전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 반기납부 승인 또는 지정된 기업,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외)
- **법인세 분납기한 연장**

(2-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개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개인)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창업 후 5년간 법인(소득)세의 50% ~ 100% 감면	
감면 대상	① 창업중소기업 ② 창업벤처중소기업 ③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 받은 내국인 ④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창업의 범위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창업일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 ☞ 다만,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창업 제외 (조특법 §6 ⑩)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한 종전 사업 승계 및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 설립 ③ 폐업 후 사업 개시 (같은 종류의 사업 개시) ④ 사업확장 및 업종추가 등

(2-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구분		과밀억제권 內	과밀억제권 外
일반창업	기본	-	5년간 50%
	신성장	-	3년간 75% + 2년간 50%
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기업	기본	5년간 50%	
	신성장	3년간 75% + 2년간 50%	
청년,소규모 창업		5년간 50%	5년간 100%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5년간 50%	

* 신성장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광숙박업, 엔지니어링사업, 직업기술 교습학원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2항)

(3-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개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개인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중기업과 소기업별, 수도권 내외, 업종별로 법인세 ·소득세의 5~30%를 감면하는 제도

내국인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알뜰주유소를 영위하는 중소기업 (요건 모두 충족)

① 『**석유및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2 3호에 따른 주유소 중 '22.1.1~'23.12.31. 기간 중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최초로 체결

② 동 기간 중 분기별 구매량이 해당 분기 판매량 50% 이상

③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영업할 것

(3-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감면세액의 산출	
계산방법	감면세액 = 산출세액 × $\frac{\text{감면대상소득}}{\text{과세표준}}$ × 감면비율
감면대상 소득	**감면대상소득 = 감면대상사업의 각 사업연도소득 – 공제액 등**
☞ **감면대상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함)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여 감면대상소득을 계산**	

소기업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도매업 등”이라 함)을 영위	**10%**
	수도권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감면업종을 영위	20%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감면업종을 영위	**30%**
중기업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영위	**5%**
	수도권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영위	10%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감면업종을 영위	**15%**

(4)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차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이월공제방법 외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 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음 (법인세법 §72, 시행령 §110)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이어야 함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및 환급대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각각 신고

○ 소급공제한 당해 결손금은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향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 반대로 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0년간 이월하여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가능

BUSINESS
PLAN

2. 시설투자와 세금

- 통합투자세액공제 -

광주지방국세청
NTS Gwangju Regional Office

(1)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개요) 기업의 설비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 활성화를 촉진하므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음

①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0/2/3)　② R&D설비(1/3/7)

③ 생산성향상시설(1/3/7)

* 단, 대기업은 '20년 2%, 중견·중소기업은 '20~'21년까지 5%, 10% 적용

④ 안전설비(1/5/10)　⑤ 에너지절약시설(1/3/7)

⑥ 환경보전시설(3/5/10)

⑦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

⑧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

⑨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

⑩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

※ ( ) :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

종전

현 행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공제금액 = 투자금액 × 공제율

○ (공제대상)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 (공제율) 기본공제 + 추가공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X 3(4)%)

구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중소	중견	일반	
일반	**10(12)**	5(7)	1(3)	**3(10)**
신성장·원천기술	**12(18)**	6(10)	3(6)	
국가전략	**25**	15	15	**4(10)**

*** ( )안의 숫자는 '23-'24년 투자분에 대한 공제율**

(임시투자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사업자 및 자산

대상사업자 및 업종	모든 내국인 (개인 및 법인) -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유흥주점업, 호텔·여관업 등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공제대상 자산	**기계 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기타 유형·무형자산** ①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자산*외의 사업용 유형자산 * 토지와 건물(부속설비 포함) 및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 조특칙 [별표1]에서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유형자산 규정** ② 건물, 구축물, 운반구 등에 해당되나 예외적으로 공제대상 포함 자산 -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 및 연구·인력개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 시설 등

업종별 공제대상 자산 범위	
건설업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어업(중소기업)	어업용 선박
운수업(중소기업)	차량(자가용 제외) 및 운반구
도소매업, 물류산업	운반용화물자동차, 무인반송차, 창고시설 등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건축물 및 승강기 등 부속설비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s/w(인사,회계, 문서작성 일반사무·지원용 제외)

3. 고용증가와 세금

- 고용을 증대 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광주지방국세청
NTS Gwangju Regional Office

(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공제 요건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 적용 가능 **('24.12.31.까지 적용가능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변경)**
적용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9③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내국인 (소득세법상 거주자,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세액공제액	상시근로자의 유형(청년등, 그 외), 기업규모(중소, 중견, 대), 소재지(수도권 여부), 공제시기에 따라 다르게 규정 (조특법 §29의7① 각 호 참조)

※ 증가된 상시근로자 1인당 공제금액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수도권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	
청년 등 상시근로자	1,1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4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800만원	9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수도권 외 청년등 '21~'22사업연도 한시적 100만원 상향**

상시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하나에 해당

①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② 단시간 근로자 중 1개월 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단,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 청년 등 상시근로자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 비거주자는 대상이 아니나, 외국인 근로자라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 포함 가능**

상시근로자 제외

❶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①은 제외)
❷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②는 제외)
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❹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❺ ❹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❻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기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공제연도부터 2년간(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 적용

예시) '21년~'23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매년 증가한 기업의 연도별 공제가능 여부					
상시근로자 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0년 대비 2021년 증가	1차 연도 공제	2차 연도 공제	3차 연도 공제 (중소·중견)		
2021년 대비 2022년 증가		1차 연도 공제	2차 연도 공제	3차 연도 공제 (중소·중견)	
2022년 대비 2023년 증가			1차 연도 공제	2차 연도 공제	3차 연도 공제 (중소·중견)

(사후관리)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 중소·중견기업 3년, 일반기업 2년 적용하지만,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 을 추가 납부 해야 함

신설된 「통합고용 세액공제」 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or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선택·적용 가능

※ 증가된 상시근로자 1인당 공제금액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수도권 밖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850만원	950만원	450만원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만원	1,550만원	800만원	400만원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1년 지원)	1,300만원		900만원	-

4. 연구개발과 세금

광주지방국세청
NTS Gwangju Regional Office

(1-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내국인이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연구개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세액 공제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비용)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추가분
일반 R&D	25%	8 ~ 20%	2%	-
신성장·원천기술	30%	20%, 25%	2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40%	30%, 35%	30%	

(1-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연구개발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5. 구분경리 및 사후관리

광주지방국세청
NTS Gwangju Regional Office

(1) 구분경리

구분할 사업, 자산 또는 수입별로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구분하여 기장 투자금액 계산방법

법인세법 상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 ②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 ③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의 승계사업과 그 밖의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상 구분경리	①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

※ 감면사업 과 기타사업의 구분경리

☞ 내국인은 조특법상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하여 경리

☞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구분경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2) 공제, 감면의 사후관리

조세지원의 사후관리

- 조세지원을 받은 후 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이미 감면받은 세금뿐만 아니라 이자상당액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

감면세액 추징사례

-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중복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투자세액공제 받은 자산을 2년 내 처분하는 경우 등

6. 유용한 세정지원 제도

광주지방국세청
NTS Gwangju Regional Office

(1) 납세유예제도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중
① 국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② 이미 고지를 받아 국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 납부기한 등의 연장 · 납부고지 유예 최대 9개월, 압류 · 매각유예 최장 1년
-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최장 2년
- 재기 중소기업인* 최장 3년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은 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 납세유예 시 남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원칙). 단,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담보 면제

7천만원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고려,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억원

1. 생산적 중소기업
2. 5년 이상 장기 계속 사업자 등 9가지 유형

2억원

1. 종합인증우수업체(관세청)
2. 20년 이상 장기 계속사업자

5억원

1. 모범납세자
2. 세금포인트 활용

(2) 납세자 권익보호

■ 권리보호 요청 제도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에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

➡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구제

권리침해 유형		권리구제
세무조사	- 중복조사와 세법령을 위한하여 조사하는 행위 - 조사 기간연장 또는 범위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일반 국세행정	- 세금 부과·징수와 무관한 자료 등을 무리하게 요구 - 고충민원·불복청구 등 절차가 이행되었으나 결정취소·환급 등 후속처분 지연	시정요구, 시정명령

■ 권리구제 제도

사전구제제도	사후구제제도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 이의신청, 심사 심판 청구, 감사원심사청구 - 행정소송 - 고충민원청구(불복 청구기간 경과한 경우)

■ 국선대리인 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에게 **국선대리인** 지원

※ 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단,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지원 제외) **(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 **(법인)** 수입금액 3억원 이하, 총 자산가액 5억원 이하

(3)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운영

기업의 수출 증대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세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신설

수출 중소기업	• 수출 비율이 50% 이상인 중소기업 • 수출제조우수 중소기업(관세청 선정)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KOTRA 선정)	혁신성장 기업	• 혁신·스타트업 중소기업 • 청년친화 강소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혁신기업 국가대표
신기술·신산업 분야	• 초격차 전략기술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등 • 녹색 신산업 : 기후테크, 환경IoT, 바이오가스 등 • 주력산업 혁신 : 디지털 혁신기업, 저탄소 전환 지원,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	구조조정	• 구조혁신 중소기업 : 사업전환·추가 중소기업, 사업구조 재구축 희망 중소기업 • 기업활력법 적용 중소기업 : 신산업 판정 기업, 과잉공급 해소 및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한 사업재편 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원재료, 중간재, 생산설비 등 생산 기업	뿌리산업 분야	공정기술, 로봇·센서 등 기술 보유

※ 소재·부품·장비 기업 및 뿌리산업 분야 : '24년 추가

공통 지원 내용

- 납부기한 등의 연장(최장 9개월), 압류·매각 유예(최장 1년)
- 신고내용확인 제외, 납세담보 면제(최대 1억 원)
- 경정청구 즉시 처리(1개월 이내), 환급금 조기지급 등

개별 지원 내용

- 구조조정 기업 세무쟁점 상담 지원
- 신산업 분야·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상담 시스템 제공
- 혁신성장 기업의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4)「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중소기업 이 어려워하는 법인세 공제·감면 신청에 대해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 을 사전에 확인 해 주는 제도

신청대상	모든 중소기업
신청기한	• 공제·감면 관련 특정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 이후** • 과거 사업연도에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 전까지
공제·감면 예시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8]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컨설팅 사례

- 전남 여수 소재 ㈜○○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컨설팅 신청('23.9.)
- '19~'22사업연도 상시 근로자 수 증가로 세액공제 가능함을 안내('23.10.)
-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하여 156백만 원 환급('23.12.)

컨설팅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의 혜택 :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 제외**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5)「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납세자의 신청 에 따라 국세청이「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적정 여부를 미리 확인 해 주는 제도

신청

-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
-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 신청
- 공제신청 누락 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전까지 신청 가능

심사

- 세법에서 규정한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선 처리 대상

- 수출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
-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신성장·원천기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심의위원회)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 기업('24년 추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의 혜택]

1.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 제외
2.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사전신청을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 절감

(6)「가업승계 세무컨설팅」제도

가업승계 를 계획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세제 혜택을 위한 **요건**을 **사전진단**

요건 진단

- 지방청 전담팀에서 기업의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진단
  (서면 컨설팅도 가능)
- 컨설팅 대상 기업이 유선·서면 자문 요청 시 의견제시

신청 대상

-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이거나
-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 진행 중인 중소기업

컨설팅 대상 선정

- 신청자에 대해 서면심사 후 대상자 선정
- 선정일로부터 1년간 가업승계 관련 세무컨설팅 실시

'23년 기준 선정 우대 기업
수출 중소기업,
30년 이상 장수기업 등

(7)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국세청 및 외부기관 보유자료, 신고내용확인·조사·감사사례, 현장정보 등을 분석하여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 ➡ **세무조사 등을 통한 세액 추징 예방**

신고도움자료 예시

- 기업 분석자료(연도별 신고상황, 공제·감면 현황)
- 신고 참고자료(중간예납세액, 공제 참고자료)
- 신고 시 유의사항
- 절세 도움말(법인별·업종별 절세정보)
- 세법 도우미(참고 세법규정, 개정세법)

세무조사 또는 신고내용확인 결과 빈번하게 추징되는 **주요 항목**

(신고 시 유의사항 **예시**)

- 지출증빙서류 없이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였는지 여부
- 법인카드를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 불성실사업자와 거래한 경우 실제 거래하였는지 여부 등

'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도움자료 에 대한
광주청 자체 제작 숏폼 영상[6개 Tab(탭)별] 제공
(광주지방국세청 유튜브 채널)

(8) 세금을 줄이는 방법

신고 前 절세 방법

신고도움자료 최대한 반영

성실신고로
세액 추징 및 가산세 미연에 방지

다양한 세무컨설팅 활용

신고 전 컨설팅을 통해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 감소

신고 後 절세 방법

수정신고

당초 과소신고한 세액을
가산세와 함께 추가 납부

경정청구

당초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세액을
신고기한 후 5년 이내 환급신청

과소신고·납부 시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40%
- 납부지연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지연일수 × 0.022%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수정신고는 빨리 할 수록 유리

-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90%
-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 75%
-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 50%
- 6개월 초과~1년 이내 : 30%
- 1년 초과~1년 6개월 이내 : 20%
- 1년 초과~2년 이내 : 10%

(9)「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감면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 포함),
조특령 제27조3항에서 규정한 업종 영위(제조, 전기, 건설, 농어업, 도소매업 등)

(감면 신청절차)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회사는 요건 판단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 제출(퇴직근로자는 직접신청 가능)

감면대상 근로자(취업자)				
구분	요건	감면기간	감면율	감면한도
청년	근로계약체결일현재 15~34세	5년	90%	과세기간별 200만원
고령자	근로계약체결일현재 60세이상	3년	70%	
장애인 등	장애인복지법상장애인, 국가유공자등 법률에따른상이자등			
경력단절 여성	①퇴직전1년이상근로소득 ②결혼·출산·육아등사유로퇴직 ③퇴직한날부터2~15년이내동종업종재취직 ④해당기업의최대주주나그와특수관계인X			

* 감면대상 제외 근로자 (대표자 등 임원, 최대주주의 친족 등)

국세청 발간 책자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법령정보 → 전자도서관 → 발간책자

국세 상담 : (전화 상담)국번 없이 126번, (인터넷 모바일 상담) 홈택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문의 전화 :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 062-236-7483 ~ 6

감사합니다.

광주지방국세청
NTS Gwangju Regional Office